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16년 8월 1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 10(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 8. 9. (화)	담당부서	원전환경과
담당과장	박동일 과장(044-203-5340)	담 당 자	한대룡 사무관(044-203-5348)

정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8.11(목)~9.19(월)까지 제정안 입법예고 -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부지 및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담은 법·제도적 장치마련**

◇ **'16. 7.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 확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8. 11.(수)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 절차법"이라함)」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이번 법률안은 지난 7. 25일(월)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관리 절차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관리 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안 제12조부터 제15조)

○ 5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 진행

㉮ (부적합지역 배제) 全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제외
㉯ (부지공모)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
㉱ (주민의사확인)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실행
㉲ (심층조사)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

②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5조부터 제11조)

○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전문적·과학적인 사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 운영**

○ 관리위원회의 안건 준비 등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조직과 기능 등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예시) 관리위원회의 정보 공개와 대국민 소통을 담당할 소통감사실 설치 등

③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 (안 제16조)

○ 동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며, 관계부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

④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도모 (안 제18조부터 제19조)

○ 부지확보 이후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시설 건설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관리시설별 위치, 규모 등 시설개요, 건설일정, 저장 또는 처분방식 등

- 지하연구시설을 설치하여 실증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처분시설 건설

○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운영·이용하기 위해 해외 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아울러,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저장·처분 기술개발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으로,**

○ 법제정을 통해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 8. 11일부터 9. 19일까지(40일간)이며,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일반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처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전화 : 044-203-5348, 팩스 : 044-203-4768)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한대룡 사무관(044-203-53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률안 전문

법률 제 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 및 열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저장·처분 등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저장”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분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시설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규정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로 본다.

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 관리사업자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분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시설

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관리사업자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분하기 위한 시설

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의 지하 환경에서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구성하는 모든 성능이 안전하게 구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시설

7.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라 한다)”이란 처분시설과 유사한 지하 환경에서 처분시설의 부지선정과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관리 등 처분시스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적용)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진흥법」 제4조제7호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제19조,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에 대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그 이행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제5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의 부지조사와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예정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5항에 따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의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국민 소통을 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심의·의결을 위해 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임직원의 설명 또는 의견진술

2.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의 자료 또는 의견 제출

3. 관계 기관의 조사·연구결과 제출

4. 관리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정보의 공개) 관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부지적합성 조사 절차

제12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이하 “부지 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지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지 조사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부지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지적합성 조사의 목적·일정 등 조사 개요에 관한 사항

2. 부지적합성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3. 부지적합성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4. 부지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부지적합성 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에 관한 사항

6. 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지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① 관리위원회는 문헌조사, 지질조사 등 과학적인 조사와 원자력안전법령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이하 “기본조사”라 한다)를 위한 후보지역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기본조사 후보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본조사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정보공개, 의견수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공모에 응모하는 시·군·자치구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조사 후보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기본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조사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의 공모 및 응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① 관리위원회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이하 “심층조사”라 한다)를 위한 후보부지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심층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심층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층조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3항제5호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방법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층조사를 신청한 시·군·자치구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심층조사 후보부지의 전부나 일부를 심층조사 대상부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리사업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정부지 확정) ① 관리위원회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정부지를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확정하여 고시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원자력진흥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 예정부지로 확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

·군·자치구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의 원칙과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부의하는 사항

② 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유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⑥ 유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유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지원방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할 때에 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지역지원의 원칙과 지원방향을 알릴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심층조사 후보부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할 때에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로 확정될 지역에 대한 지역지원방안을 유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알릴 수 있다.

제4장 관리시설 건설·운영

제18조(관리시설의 건설) ① 관리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확정되는 경우 관리시설에 대한 건설계획(이하 “건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시설별 용도, 위치, 규모 등 시설개요에 관한 사항
2. 관리시설별 건설일정
3. 관리시설별 저장 또는 처분방식에 관한 사항
4. 관리시설별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시설의 건설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사업자는 건설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사업자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또는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 연구시설에서의 실증·실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 확보, 시설의 운영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관리시설의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운반·포장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인수·인도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
4.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5. 그 밖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반·저장·처분 등에 대한 관리기술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에서 국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을 이용·건설 및 운영하기 위해 해외 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보고와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관리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사업자가 이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관리사업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22조(대집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사업자의 임직원, 관리위원회 및 유치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 칙

제24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 또는 선동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손괴·절취하거나 관리시설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